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대한 기독교 경제윤리학적 연구\*

정재후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 I. 서론

### II.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근거

1. 기본소득의 정의와 목적
2. 경제 정의와 기본소득의 자원

### III.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병행

1. 안심소득의 정의와 목적
2. 양자택일이 아닌 병행 제안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04>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23S1A5B5A17084909)

---

• ABSTRACT •

---

A Christian Economic Ethical Study on Basic Income  
and Assured Income

Visiting Prof. Jung, Jaehoo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Over the past decade, discussions on “basic income” have gained significant momentum. Particularly, the structural and employment shifts brought abou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led to a surge in the number of “precarious workers” (precariat). Consequently, basic income, as a fundamental element of citizenship and a means to enhance real freedom, has become a key topic of debate. The justification for basic income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lies in the idea of creating a system that allows God’s grace to benefit all people. Unlike traditional welfare systems that target heads of low-income households through means testing, this concept entails unconditional payments to individuals. However, the basic income proposed here does not signify an amount sufficient for living without work but rather the minimum necessary for subsistence.

As for funding basic income, the author opposes increasing taxes such as income tax or value-added tax (VAT). Instead, imposing taxes on “land ownership”, “carbon emissions”, “commons” and “big data” is both feasible and justifiable. “Assured income” is a welfare system designed to address the disincentive to work that arises when welfare benefits decrease or are withdrawn as recipients’ income increas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ssured Income does not render basic income unnecessary. Basic income can coexist with the current welfare system and remains compatible even if the existing welfare framework transitions to “assured income”.

**Key words:** Basic Income, Assured Income, Economic Justice, Taxation of Unearned Income, Commons

---

## I. 서론

최근 수년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적절한 소득의 확보는 더욱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개념, 지급 액수, 재원 마련, 각 나라 상황의 차이 등에서 오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자면, ‘기본소득의 서서적 근거, 곧 기독교윤리학적 근거가 있음을 밝히는 것’, ‘기본소득의 순기능과 정당성에 대한 것’, ‘기본소득이 경제 정의, 생태 정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 ‘기본소득의 재원’, ‘안심소득의 순기능’ 등 유익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혹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될 수 있고, 병행되어야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없다.

본 연구의 기본소득 개념은 현행 복지 제도와 병행되어야 하고, 현행 복지제도가 안심소득제로 변경되어 시행될 때도 병행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즉, ‘기본소득만 있는 복지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개념은, ‘모든 국민이 일을 안 하고도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액수’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와 병행하는 의미로서, 1인당 월 30만 원 정도의 개념이다.<sup>1)</sup> 물론, “그렇게 적은 돈을 지급하

1) 나중에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재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 그리고 국민 공감대 등의 문제로, ‘기본소득 1인당 매월 30만 원’이 단번에 실행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액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금액을 말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크게 상정하여 ‘엄청난 증세가 필요하기에 기본소득은 실현이 되면 안 된다’라는 편견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30만 원의 의미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면서

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질문할 수 있다.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이라도 그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본문에서 기독교 윤리학의 입장에서 다루겠다.

현행 복지제도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만일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수급액이 줄거나,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노동 의지를 꺾게 되는 역기능이 있다. 안심소득은 이 점을 보완한 제도로서, 기존처럼 자산조사를 통해서 선별 지급을 하되 수급자의 ‘노동을 유인’하는 제도다. 결국,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안심소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기존의 복지제도가 안심소득체로 개편되는 경우에도, 기본소득은 안심소득과 병행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 II.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근거

### 1. 기본소득의 정의와 목적

#### 1) 정의, 목적, 편견 극복의 과제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세 가지 구체성을 띤다고 설명한다. 첫째, 세대주가 아닌 각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둘째,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준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셋째, ‘구직활동’, 즉 일을 할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sup>2)</sup> 기본소득은 생존이 가능

동시에 시민 개개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음으로 실질 자유를 증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한 액수이다. 물론 이 금액은 미래에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가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받으면 국민 모두 직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비약이고 편견이다. 오히려 개인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고용 조건이 열악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기에, 고용주들은 착취 수준의 고용 조건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또한 노동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일들(육아, 봉사, 가사노동 등)이 유급 노동이 되게 하는 의미가 있다.<sup>3)</sup> 따라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에 위협을 주는 급진적인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약점들을 보완함으로써 자유 시장 경제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이것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를 확대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기본소득의 특징은 세대주인 가장에게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한다. 이 의미는 ‘가부장적 폭력’<sup>4)</sup>이 있을 경우에, 폭력적인 상황이 없다고 해도 세대주가 수급액을 어떤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다든지, 가족 모두에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각자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대주가 복지 수급자라도 그 가족들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쫓기듯이 자신의 재능이나 비전과 상관 없이, 고용 조건이 아주 나빠도 일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있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2) Philippe Van Parijs, Yannick Vanderborght, *Basic Income*. 홍기빈 역, 『21세기 기본소득』 (서울: 흐름출판, 2018), 30-31.

3) 위의 책, 64-67.

4) 의사인 정상훈은 자신의 병원에 종종 찾아오는 주부가 몸에 피멍이 들어 있어서, “왜 이혼하거나 남편을 피해서 다른 데서 살지 않냐고?” 물었더니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 당장 자신과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매 맞아도 참고 살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세대주가 아닌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공부하고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정상훈, 『동네의사와 기본소득』 (경기: 루아크, 2020)

일을 찾을 기회가 유리하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레이스는 기본소득을 헌법상의 자유에 대한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본다. 그는 “특정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정말 자기 뜻대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현저하게 증대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반드시 한 개인이 일생 동안(노동을 안 해도) 제대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여야 할 필요는 없다.”<sup>5)</sup>라고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으로 기본소득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기본소득은 그 정의와 유형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행복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sup>6)</sup>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와는 달리 수입이 생긴다고 지급을 철회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지급이 국민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키지 않는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도입모델을 생각해 보면, 1인당 매달 25~30만 원 정도의 최저생활보장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기본소득은 인간답게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리며 일하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닌, 무소득자가 좌절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sup>7)</sup> 따라서 기존의 복지제도 및 사회보험을 해체하거나 줄여서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는 주장이 아니다. 기존 복지제도와 병행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다. 파레이스도 이 점을 강조한다.

합리적인 기본소득 제안이 주장하는 바는 그저 무조건적인 소득의 하한선

5) Philippe Van Parijs, Yannick Vanderborght, 373.

6) 이지나, 황명진, “사회복지 담론으로서의 기본소득 고찰,” 『공공사회연구』 제12권 1(2022), 125.

7) 위의 책, 132.

을 제공하지는 것뿐이며, 장기적으로 보아도 거기에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엮는 일과 아무런 모순도 보이지 않는다. ... 기본소득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대체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고유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sup>8)</sup>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금액을 크게 산정하여,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크게 증세가 필요하고, 국민은 일하지 않게 될 것이기에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본소득이 철학적, 신학적,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도 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논의와 수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파레이스는 이 점을 지적한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착각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막중하게 늘어나리라는 것이다.<sup>9)</sup> ... 우리는 엄격히 개인을 단위로 삼는 부분적인 기본소득을 조심스럽게 도입하면서, 기존의 공공부조 시스템에 추가하는 조건부 기본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일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을 뿐이다.<sup>10)</sup>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편견을 지적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 가운데 하나는, '일하지 않음으로 사회적 기여가 없는 데도 세금을 가져간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 일하지 않고 물려받는 부모의 부의 상속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실상 지대소득

8) 위의 책, 408.

9) 위의 책, 471-472.

10) 위의 책, 474-475.

(rentier income)이나 부의 상속, 부자들의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은 기본소득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지적한다.<sup>11)</sup>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자들은 ‘기본소득이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세금을 축내도록 하는 것이기에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공격을 종종 하지만, 오히려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각종 세금 면제와 보조금 제도, 그리고 세금 회피라고 비판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1,000억 달러가 넘는다. 농업 보조금은 대부분 대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기후에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역진적이다. 또한 조세 회피를 위해서 수많은 자금이 해외에 예치되어 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엄청난 거액의 돈이다. 그런데 시민권의 실질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소득 지급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 수사를 만든다.<sup>12)</sup>

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은, 사람들이 공짜 돈이 생긴 것이기에 그것으로 술, 담배, 마약 등 나쁜 것들을 구매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세금을 가지고 굿즈(goods)가 아닌 배즈(bads)에 쓸 것이라는 편견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실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배즈가 아닌 굿즈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sup>13)</sup>

스탠딩은 현행 자산조사(means-tested schemes) 복지제도의 문제점, 곧 수급자에 대한 낙인효과, 자격 조건의 여러 사항을 숙지하기 어렵기에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 높은 행정비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sup>14)</sup> 반면에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는 경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도

11) Guy. Standing, *Basic Incom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117-118.

12) 위의 책, 132-134.

13) 위의 책, 119.

14) 위의 책, 89.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인디언 원주민인 체로키 부족에 대한 정기적인 금액을 지급했을 때, 그 효과로 인하여 싸우는 부모들이 줄었고 자녀들은 염려와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학교생활을 더욱 잘하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sup>15)</sup> 나아가서 인도의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내가 매달 받는 돈이 생긴다'라는 의미는, 시민들의 자존감 회복과 자기 결정권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스텐딩은 그것을 기본소득의 '해방적 가치'(emancipatory value)라고 이야기한다.<sup>16)</sup>

이러나, 황명진의 연구<sup>17)</sup>에서 기본소득의 순기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은 '공동체 기능'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복합평등(Complex Equality)'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넷째, 기본소득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다. 다섯째, 기본소득은 '일(work)과 소명(vocation)'의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강남훈은, "기본소득은 효과성, 형평성, 공정성, 효율성을 갖추고 '도적적 해이'를 막으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sup>18)</sup>라고 정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불안정 노동자 급증의 시대를 대비한 필수 정책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최소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여성친화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를 보면,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에 비해 세 배 정도가 많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임금 불평등 수치가 한국이 가장 높다.

15) 위의 책, 91-92.

16) 위의 책, 66-67.

17) 이지나, 황명진, "사회복지 담론으로서의 기본소득 고찰," 150-152.

18)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경기: 박종철출판사, 2020), 146.

그렇기에 여성의 입장에서서는 기본소득이 더욱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sup>19)</sup> 산업화 시대 이후, 노동의 가치가 오직 재화적 가치로만 환산이 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사의 다양성과 소명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다양한 은사는 경제적 가치를 초월하여 가정과 사회에 필수적이며 유익한 것이다.<sup>20)</sup> 정미현은 츠빙글리가 당시 전쟁에 참여하여 돈을 벌고, 평화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급급했던 ‘스위스 용병제’를 비난하고 사회개혁을 시도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개혁교회의 후예답게,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분단을 합리화하고 유지하는 이익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와 신학은 기본소득을 좌파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취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건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21)</sup>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해도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점을 숙고하면서 한국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으로 적당한 금액과 재원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먼저 맷 즈볼린스키(Matt Zwolinski)는 기본소득이 노동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히게 해주고, 극도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아니요!’,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실제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 그러

19) 정미현,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적, 윤리적, 여성신학적 고찰,” 정미현 외 공저,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200-201.

20) 위의 책, 212-213.

21) 위의 책, 220.

나 그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액수가 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기에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을 예로 두 가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1인당 매달 500달러(한화 70만 원, 4인 가족 기준 280만 원) 혹은 1,000달러(한화 140만 원, 4인 가족 기준 560만 원)를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고려하면서 매우 큰 예산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그는 전반적인 증세가 크게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부가가치세, 누진세를 올리는 방안과 함께 금투세, 주식거래세, 탄소세, 국토보유세를 증세하거나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sup>23)</sup>

이렇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순기능을 주장한다고 해도, 재원 마련을 위해 이토록 엄청난 증세를 가져와야 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서론에서 밝혔듯이, 단순히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 액수와 그에 따른 재원에 대한 그것을 언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 1인당 30만 원을 고려하는 것이기에, 개인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증액할 필요가 없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만 신설하면 된다. 기본소득 ‘월 30만 원’ 재원 마련에 대한 것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물론 ‘월 30만 원’이란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다만, 4인 가구 120만 원 정도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고 거기에 노동이 가능한 가족들이 일을 해서 추가로 수입을 얻도록 노동 유인을 한다는 것이다.<sup>24)</sup>

기본소득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1) 불안정 노동자 급증의 시기에 국민의 기본 생존권 확보 2) 세대주가 아닌 각 개인의 주권

22) Matt Zwolinski and Miranda, Fleischer, *Universal Basic Incom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39-42.

23) 위의 책, 43-45.

24)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65세 이상 노인) 등을 수급받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기본소득 30만 원의 30% 선에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50% 선에서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다.

확보 3) 복지 사각지대 완화로서 약자 보호 4) 직업 선택에 있어서 실질적 자유의 증대 5)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6)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재원 마련으로 경제 정의 실현 7) 경제성장 강박증에 대한 ‘안식’(쉬)과 생태지향적 경제윤리 등이다.

## 2) 성서적 근거와 종교개혁 사상

김회권은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땅 신학’<sup>25)</sup>을 설명한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공동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누가 독점할 수 없이 그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으로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안식년과 희년은 그 정신을 실현하는 약자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시험의 영역이고 신앙의 진실성의 시금석이다.<sup>26)</sup>

기본소득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라는 연대 의식에서 출발한다. 성서의 가르침은 개인의 역량과 그에 따른 보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약자 보호가 중요한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sup>27)</sup> 연대성에 근거해서 보면, ‘노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가 없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 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노동한 사람들의 십일조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

25) 김회권,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 정미현 외,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26) 위의 책, 58-65.

27) 강철구,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본 기본소득,” 박성철 편,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경기: 한국학술정보, 2023), 33-34.

나갔다. 따라서 레위인의 십일조는 기본소득과 연결성이 있다.<sup>28)</sup>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서의 ‘약자보호 정신’과 ‘거룩의 명령’을 주목하게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특히 약자로 지칭되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레19장)이다. 자신의 땅에서 추수할 때라도 떨어진 곡식을 주인이 다 가져가지 말고 “약자들이 가져가서 먹게 하라!”는 명령은 거룩한 배려이다. 그 배려의 정신 속에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정의 없이는 평화(shalom)도 없다.

평화로운 공존으로서의 평화(shalom)은 약자 보호의 정의를 요구한다. 정의는 타자의 몫을 내가 탐내지 않고, 독점하지 않고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았을 때, 각자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몫을 나누어 먹는 훈련을 했다. 광야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은 만나를 모으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경험을 했다. 타자를 배려하지 않고 탐욕으로 만나를 비축하는 것은 불의이다.<sup>29)</sup>

출애굽 과정에서 ‘만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 없이, 차등 없이, 각 개인에게 공급해 주었다. 만나가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생존권 및 실질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였다.<sup>30)</sup> 이 점이 기본소득에 대한 중요한 성서적 정신을 제공할 수 있다. 신약에서 예수의 첫 설교이자 메시아 취임 선언문인 눅4:18-19의 말씀 중에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목하게 된다. 예수의 사역 중심에는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실현이 구체적으로

28) 박유미, “레위인의 소득과 노동을 통해서 본 기본소득,” 박성철 편,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경기: 한국학술정보, 2023), 62-63.

29) A. J. Swoboda, *Subversive Sabbath*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18), 84-85.

30) 고재길, “그리스도교 경제윤리와 기본소득,” 성석환 외, 『오늘의 기독교윤리학』 (서울: 장신대출판부, 2023), 148.

보인다. 곧 종이 된 것, 병든 것, 가난에서의 해방이 인간에게 실질적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이다.<sup>31)</sup>

마태복음 20장 1-15절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재능과 노동 시간과 기여도보다 초월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과 기여도에 관계없이 포도원의 품삯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현대 상황 속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햇빛을 주시듯이 모든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 일용할 양식은 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성서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계시하고 있다. 고도 경제 성장이 가져오는 폐해들이 심각하기에 경제 성장은 천천히 가 되 더 건강하게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성서의 안식년 사상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고도 성장의 강박증에 빠져 있는 현대 경제학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마이어스(Ched Myers)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Gift)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생명, 구원이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한계’(Limits)를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sup>32)</sup> 이 한계는 탐욕의 절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많이 갖지 않는 것이다.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의 해방 정신으로 이어져 경제정의에 입각한 재분배와 약자들의 부채탕감 등의 경제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을 ‘안식일 경제(학)’(Sabbath Economics)라고 부를 수 있고 현재 경제불의와 생태불의로

31) 위의 책, 149.

32) Ched Myers, *The Biblical Vision of Sabbath Economics* (UK: Lab/Ora Press, 2023), 3-4.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가 대안적인 문화로 안식일 경제를 배우고 실현해야 한다.<sup>33)</sup>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와 생태계’를 제안하기에 더욱 기독교 경제윤리학적 근거와 호응할 수 있다. ‘맘몬’을 섬기는 것, 곧 ‘소비주의의 제의’(liturgy of consumerism)는 소비자를 향하여 하나 더, 이것도 저것도 더 구매하라고 부추긴다.<sup>34)</sup> 이처럼 만족을 누릴 목적으로 소비 상품을 끝없이 얻고자 하면, 과잉 생산과 토지 남용을 할 수밖에 없고 제한된 석유와 물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계에 ‘안식’이 없음은 생태계를 짓밟는 결과를 낳는다.<sup>35)</sup>

‘종교개혁과 복지 제도, 약자 보호의 정신’<sup>36)</sup>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우리의 유산이다. 칼빈의 제네바시에서는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 가난한 이웃을 체계적으로 섬기는 복지제도로 실현이 되었다. 칼빈은 ‘프랑스 기금’(the Bourse Francaise)을 설립하여 6천여 명의 난민들과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수용하고 구제하였다.<sup>37)</sup> 사회 변혁은 교회와 세상과의 의식적 분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삶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삶의 질의 차이이다.<sup>38)</sup>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돈을 빚진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라고, 다시 말해서 ‘희년’을 실천에 옮기라고 말씀한다.<sup>39)</sup> 희년은 각 가정의 생산적인 자본이 평등

33) 위의 책, 4-8.

34) Walter Brueggemann,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7), 13.

35) 위의 책, 15.

36) 종교개혁과 복지제도의 연결성은 다음의 글을 참조. 정재후,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권리에 대한 기독교 경제윤리학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5(2023), 414-418.

37) David W. Hall, *Calvin in the Public Square* (New Jersey: P&R Publishing, 2009), 106-108.

38)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7), 80-81.

39) 위의 책, 117.

해지도록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sup>40)</sup>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제사상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칼빈과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이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했던 것을 현대 경제 문제로 적용점을 찾는다면, 기본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유준은 특히 칼빈의 경제사상을 ‘지공(地公)주의’라 해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공주의는 토지 사용의 대가는 사회가 공유하고, 노동과 자본 사용의 대가는 개인이 사유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공주의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을 통해 경제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를 함께 꾀하는 체제이다. 물론 칼빈의 경제 사상은 자본주의에 영향을 주었다.<sup>41)</sup> 그러나 무한 자유 경쟁과 그 결과를 그대로 방치하는 의미의 자본주의는 아니다. 칼빈의 경제사상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둘의 약점을 보완하는 경제 체제’<sup>42)</sup>에 종교개혁자들이 통찰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sup>43)</sup> 그런 면에서 김유준은 칼빈의 경제사상이 현대의 기본소득 도입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빈의 경제사상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구약의 회년 사상과 교부의 사상을

40) John Howard Yoder, *Body Politics*. 김복기 역, 『교회, 그 몸의 정치』 (대전: 대장간, 2011), 76-77.

41) 김유준, “종교개혁자들의 회년 사상,” 김근주 외, 『회년』 (서울: 홍성사, 2019), 231-233.

42) 북유럽의 덴마크, 스칸디나비아반도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 종교개혁을 이룬 여러 나라들이 고전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장하는 가운데서도 불평등 완화와 복지제도가 정착을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43) 김유준, “종교개혁자들의 회년 사상,” 235. 지면 제한상, 루터의 경제관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 루터의 경제관은 김유준의 같은 글(220-230)을 참조.

통해 토지와 공유물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 거부, 땅의 재분배와 채무변제, 그리고 재산이 사회적 억압 기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공주의적 경제사상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한 칼빈의 경제사상이 기본소득 도입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sup>44)</sup>

또한 4차 산업 시기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과 기계화, 자동화, AI 등으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이 오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 생존과 함께 존엄성이 보전되어야 한다. 2022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국내 노동 시장 임금근로자의 42%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sup>45)</sup> 또한 시간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한다면 불안정 노동자의 비율은 더 클 것으로 본다. 4차 산업 시대의 확대로 앞으로 점점 더 ‘불안정 노동자’(precarariat)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46)</sup> 4차 산업 시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인공지능 권력이 독점적 수익을 지배하게 되는 초양극화 시대가 올 것이며, 0.0001%의 IT 공룡 기업의 순이익만 급증할 뿐 수많은 노동자가 불안정 노동자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sup>47)</sup> 기본소득이 실현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는, 불안정 노동자로 전락하여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진 수많은 시민이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sup>48)</sup>

44) 김유준, “존 칼빈의 경제사상과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사 학회지』 65(2023), 21.

4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2022124&vw\\_cd=MT\\_ZTITLE&list\\_id=B\\_14\\_002\\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2022124&vw_cd=MT_ZTITLE&list_id=B_14_002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46)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경기: 박종철출판사, 2020), 132-133.

47) 김동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60-62.

48) 위의 책, 65.

## 2. 기본소득의 재원과 실행 방법

### 1)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기본 소득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장의 효율성도 약화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sup>49)</sup> 미국 경제 불평등의 상당 부분은 불로소득인 ‘지대추구’(rent-seeking)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기에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상위 계층의 방종을 억제하여 금융규제, 독점금지법 강화,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조세 개혁 등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0)</sup>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지대추구와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 문제가 심각하다. 2022년 기준 개인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가 가격 기준으로 0.81이고 면적 기준으로는 0.916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소작농이었던 시대, 해방 직후의 지니계수가 0.73이니 현재가 토지 소유 불평등이 더 심화되어 있다는 뜻이다.<sup>51)</sup> 이렇듯, 부동산 불로소득이 크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남기업은 상세하게 국토보유세 재원과 기본소득의 예시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실시했을 때,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대폭 늘려서 내야 한다!’라는 우려와는 달리 국민의 대다수, 즉 85% 이상이 순 수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sup>52)</sup>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일해서 번 돈이라 최소한의 세금이 정당하다고

49) Joseph,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경기: 열린책들, 2020), 202-204.

50) 위의 책, 433-442.

51) 남기업 외,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경기: 이상복스, 2023), 73.

52) 위의 책, 154-160.

본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모든 국민이 소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서 증액에 조세저항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 상황에서는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거대하고 OECD 평균보다 부동산 실효 세율이 적기에 우선적으로 국토보유세가 재원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이 정당하다면 그 재원도 정당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천연물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천연물인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 과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또한 생산활동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에서도 바람직한 세금이다. 국민 85% 정도가 순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sup>53)</sup> 필자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와 병행하는 것이기에 기존에 편성된 복지예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본소득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와 공유제, 환경에 대한 세금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했듯이, 근로세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조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근로소득, 즉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과세하고, 불로소득에는 엄중한 과세를 하는 것이 조세 정신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지도자는 물론이고 국민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 국토보유세의 법리적 근거는, 건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일반재화이지만, 토지는 천연자원이며 재생산이 불가능한 한정 자원이며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이다.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노력

53) 전강수, “부동산 공화국을 넘어 땅이 대우받는 세상으로 가는 길,” 계간 「창작과비평」 여름호(2021), 267-268.

으로 그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지대 수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sup>54)</sup> 국토보유세에 따른 기본소득을 간단히 예시해 보겠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토지 공시지가는 약 4,474조 원이다. 이 공시지가에 1년에 0.5%에서 4%까지 대통령령으로 국토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0.5%로 시작을 한다면 연간 1인당 25만 원이고, 4%까지 한다면 연간 1인당 328만 원이다.<sup>55)</sup> 따라서 단계적으로 증세하여 국토보유세를 4%까지 징수하고 이에 더하여 ‘탄소세’(환경세), ‘공유재세’ 등이 더 재원으로 마련이 된다면 ‘1인당 기본소득 매월 30만 원’은 불가능한 예산이 아니다.<sup>56)</sup>

만일 탄소세와 공유재세로 인한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다면, 국토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의 50%는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50%의 재원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쓴다면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안’과 함께 청년들이 결혼하여 살 수 있는 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토보유세를 통하여 불로소득을 줄여나간다면, 국민 경제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sup>57)</sup>

## 2) 공유재(communs)와 기본소득

천연자원은 물론이고 인류가 함께 건설해 온 문명, 제도, 시설 등도 ‘인공적 공유부’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기반으

54) 경기연구원 엮음, 『답이 있는 기본소득 - 국토보유세 설계와 세제 개혁』 (서울: 다함미디어, 2021), 100-101.

55) 위의 책, 122.

56) 만일 탄소세와 공유재세가 징수될 수 있다면, 그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보유세를 4%가치가 아닌, 2~3% 선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에 대한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행정적 방법들과 예산,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 시의 효과에 대한 것은 위의 책, 107-138. 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57) 정재후,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권리에 대한 기독교 경제윤리학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5(2023), 421-422.

로 하는 플랫폼 사업들의 막대한 이익도 인류의 공동자산에 근거한 것이기에 그 막대한 수익 일부는 가칭 ‘공유재제’ 등으로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관점이다.<sup>58)</sup> 공유재(공유지, commons)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접적인 사용의 기회를 얻기에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어 관리하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유지를 개발한 소득에 대한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에게도 ‘사회배당’으로 지급한다면 분배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sup>59)</sup> 인류의 ‘공유자산’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을 일부 사람들만 전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점은 비기독교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하물며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공유 자원에 대한 신적 소유권을 전제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유 재산의 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더욱 법 논리로서도 타당하다.<sup>60)</sup>

권정임은 파레이스가 주장하는 ‘생태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유지 수익이 재원이 될 수 있다면, 수익이 아닌 훼손에 대한 것 역시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의에는 분배적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선적’(reparative) 정의도 있기 때문이다. 생태자원의 활용이 수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생태계를 수선(복원)하는 데에도 재원이 쓰여야 한다. 따라서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훼손에 대한 생태세를 모두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생태 훼손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세를 증액하여 절반은

58) 권정임, “생태공유지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인문사회21』 10(2)(2019), 1566-1567.

59) 권정임 외,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경기: 진인진, 2020), 179-180.

60) 조혜신, “회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소고-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신앙과학문』 23(3)(2018), 286-287.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일, 가령 재생에너지 개발 등 생태친화적 기술 개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 절반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sup>61)</sup>

강남훈은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대안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시민소득세’(시민배당), ‘국토보유세’(토지배당), ‘환경세’(환경배당)가 가능하다고 예시한다. 시민소득세는 가계 귀속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금융, 부동산 수익)을 합하여 과세하는 개념이다. 가계귀속소득은 가계본원소득과 가계자산소득의 합으로 정의한다. 이럴 때 과세할 수 있는 총액은 2017년 기준 1,061조이고 10%의 과세를 하면 106조 원이 된다. 가계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약 14조 원이 된다. 따라서 연간 120조 원의 시민 배당 재원이 마련이 된다. 국민 1인당 30만 원이 가능한 예산이다.<sup>62)</sup> ‘얼마나 세금을 증세하려고 이려는가?’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강남훈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현재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국민 순 수혜는 82%가 되고 18%가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분석했다.<sup>63)</sup>

물론 재원과 세금에 대한 것은 여러 학자의 견해 가운데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더욱더 세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과 세금에 대한 대안을 일부 소개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철학적),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재원과 세금 문제는 다양한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61) 권정임, “생태공유지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1570.

62)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158-165.

63) 위의 책, 170-173.

### III. 기본 소득과 안심소득의 병행

#### 1. 안심 소득의 정의와 목적

##### 1) 안심 소득의 정의와 순기능

‘안심소득’<sup>64)</sup>은 기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사회수혜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안심소득 역시 경제적 약자를 돕는 복지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제도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근거와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안심소득을 다루게 된 계기는, ‘보수정당은 안심소득’,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으로 정책을 펼쳐 국민이 양자택일을 하게 하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안심소득 역시 최대한 많은 경제적 약자가 혜택을 받게 하지는 기본 소득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수혜자의 폭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게 되면 기본 소득에 가까워지게 된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거나, 안심소득으로 수정 보완이 되면 기본소득은 필요 없게 된다고 주장할 때, 그 기본소득은 필자가 생각하고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다르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을 받는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다. 앞서서 그 의미와 금액의 수준에 대한 것, 재원도 설명을 했었다. 따라서 현행 복지제도가 안심소득으로 개편이 된다고 해도 필자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안심 소득과 함께 실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64) 서울시는 당초 안심소득이란 용어에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는 ‘서울 디딤돌소득’이라고 쓰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안심소득 용어를 사용했기에 본 논문에서도 안심소득으로 사용하겠다.

그렇다면 왜 안심소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가? 그것은 현행 복지제도가 노동 유인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를 받는 4인 가구에서 누군가 일을 해서 연간 1,200만 원을 번다면, 그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든다. 그러나 안심소득제는 생계급여가 줄지 않으면서 소득은 늘어나기에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살리고 소득이 늘어나게 유인할 수 있다.<sup>65)</sup>

안심소득은 현 복지제도를 조정하여 개편한다. 현행 기초생활 지원 급여 가운데서 교육, 의료, 출산, 장제 급여는 유지하고 생계, 주거, 자활급여, 근로·자녀 장려금, 차상위계층 지원을 폐지함으로써 예산상 크게 증액할 필요가 없다. 복잡한 제도를 줄임으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실제로 4인 가구 기준 연간 2,000만 원을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 근로를 할 경우에 그 수급액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나 사업 소득의 60%씩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안심소득제의 장점이다. 또한 안심소득의 장점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층 가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노동 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급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sup>66)</sup>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 예산에서 약간의 예산 증액만 필요하다. 2019년 기준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수정하여 안심 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 순증액은 29조 7,437억 원이다. 이 정도의 순증액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sup>67)</sup>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균등성과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65) 김성기, “사회보장제도의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9 no.4(2019), 600.

66) 위의 책, 607.

67) 박기성, 조경엽,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21), 5.

평가된다. 안심소득의 경우 지니계수는 7.0%, 소득 5분위 배율은 24.4% 감소하는 반면에 기존 제도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안심소득은 GDP 0.24%의 감소 요인이 되고, 기본소득제는 0.54%, 기존 제도는 0.49% 감소하여 이 역시 안심소득이 우수하다. 안심소득은 실업률 증가에 0.03% 요인에 불과하고 반면에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 모두 0.3% 증가 요인이 된다.<sup>68)</sup> 이렇듯, 안심소득의 순기능은 현행 복지제도보다 수급자의 노동 유인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급자가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효율적인 복지제도라고 보는 것이다.<sup>69)</sup>

그러나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비교해서 안심소득이 우위라는 위의 연구는, 안심소득 예산 전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제안하는 기본소득 개념과 다르다. 기존 복지 예산이나 안심소득 예산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 예산이나 안심소득 예산과는 별도로 기본소득이 추가되는 것이다. 즉, 안심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고,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절반, 혹은 30% 등 적정선에서 추가가 되는 것이다.<sup>70)</sup>

## 2) 서울시의 안심 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보수정당 소속인 오세훈

68) 위의 책, 9.

69) 위의 책, 38.

70)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의 병행예시를 해 보면,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매월 1인당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안심소득 수급자는 기본소득 30만 원의 50% 혹은 30%의 금액이 추가되는 개념이다. 안심소득,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을 받는 수급자들에 대한 기본소득 금액은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다. 2022년도 1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받는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를 선정하여 연구 집단을 구성하고 실험하고 있다. 수혜자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점차 중위소득 85%로 늘려갈 계획이다.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실험적 성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5년간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취지에서, 기존 보장제도에 비해 진입조건을 완화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71)</sup>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어 4인 가구 기준 최대 수여액을 산정한다면, 소득이 전혀 없는 중위소득 50% 이하자인 경우에는 월 23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다. 2-3년간의 시행 후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한다고 한다. 현행 복지제도가 안심소득으로 개편이 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안심소득제가 단점이 없는 최상의 제도라는 뜻은 아니다. 자산조사를 통한 복지제도의 한계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안심소득제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들도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보편복지 즉, 기본소득이 모든 복지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전체를 하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이다. 안심소득에 대한 비판점들을 다루지 않은 것은 (지면상의 한계뿐 아니라) 본 논문의 관심이 ‘안심소득과 기존 복지체계’ 혹은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비교해서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복지제도가 안심소득으로 개편이 된다고 해도 기본소득은 병행될 수 있

71) <https://ssi.welfare.seoul.kr/web/contents/bizguide.do>

고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심소득을 간단히 다루고 있는 것이다.

안심소득에 대해서 보수정당이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복지 예산 증액을 하지 않아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에 증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별복지가 보편복지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보정당의 기본소득 정책보다 우위에 있는 정책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양자택일의 개념의 한계를 가진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다. 즉 기본소득의 금액을 크게 가정하여 그에 따라서 엄청난 증세를 해야 하고, 국민은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에,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기본 소득이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하려는 큰 금액의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 생존을 위한 것이며, 30만 원 정도의 개념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현행 복지제도와도, 서울시가 실험하고 있는 안심소득과도 병행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제도이다.

## 2. 양자택일이 아닌 병행 제안

### 1) 재원보다 정치적 합의가 더 필요

기본소득의 실시는 경제적인 문제, 곧 재원 문제, 그리고 정의론의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다.<sup>72)</sup> 정치적 수사(修辭)를 어떻게 만들고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실제 민심과 정치적 권력과는 괴리가 있다. 유럽에서 2016년에 ‘달리아 리서치’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3분의 2가 기본소득을 지지했지만, 정책적 실현은 되지 않았음을 스탠딩은 지적한다.<sup>73)</sup> 기본소득의 윤리적,

72) Guy. Standing, *Basic Income*, 281.

73) 위의 책, 282-283.

철학적 정당성 — 경제 정의, 실질 자유 증대, 경제적 보장, 기본 인권 — 은 잘 확립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기득권이 ‘지대추구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sup>74)</sup> 지대소득이 큰 부자들은 자신들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을 알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실시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확산시켜야 한다. 만일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 실시도 그 여건이 안 된다면 선별된 집단(가령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기본소득을 우선 시행하면서 점차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스탠딩은 여론 형성과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75)</sup>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소득을 실시하기에는 더욱더 안 좋은 정치적 여건이 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의 확대가 자칫 좌파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비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보수정당은 기본소득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교회의 보수적인 경향은 이를 반영하여 신학과 교회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확대되기 어려운 주제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사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약점들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자유시장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이다. 시작부터 큰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무리한 증세 등의 과격한 적용이 아닌 점진적인 적용은 예산상의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기본소득의 목적과 순기능들이 달성되어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의 재원이 경제 정의, 생태 정의에 부합하는 재원으로 마련이 된다면, 이것은 경제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74) 위의 책, 291-292.

75) 위의 책, 292-293.

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국민 모두에게!’라는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교회는 기본소득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2) 경제 정의와 생태 정의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능력주의’가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자신이 누리는 지위와 보상이 자기 능력과 노력에서 온 것이기에, 그것은 공정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장 승리주의는 제3의 담론 즉 ‘능력주의’ 담론을 촉발했다. 그러나 가정의 배경을 무시하고 모든 경쟁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sup>76)</sup>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을 보면서 국가, 사회, 가정으로부터 오는 ‘운과 우연’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 개념에 상응한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것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자들과 평등하게 나누려는 노력은 기독교인의 정의 실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공공선을 확대하는 것은 성서의 율법 정신, 즉 약자 배려와 정의의 실현을 통한 살롬의 정신과 상응한다고 본다. 불평등 확대와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정의와 생태 정의가 필요하다. 자본이 노동의 가치를 압도하고, 경제 성장과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제 체제와 가치 체계에서는 대량생산과 소비, 생태계 위기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의(경제정의)와 생태정의는 정의의 두 형식이다.<sup>77)</sup>

76) Michael J. Sandel,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서울: 와이즈베리, 2022), 110- 111.

77) 강원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인 그린뉴딜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구상,” 『신학 과교회』 14(2020), 295-296.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로 경제 정의와 생태 정의를 연결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강원돈은 신학이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담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 창조론의 틀에서 피조물의 권리를 확립한다. 둘째, 노동은 인간이 삶을 꾸려나가는 활동의 일부이고, 인간은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노동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은혜의 사건에 의해 창설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넷째, 하나님의 정의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하여 구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sup>78)</sup>

경제성장과 소득 증대의 무한한 이상향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 물론 기본 의식주와 위생, 자녀 교육,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의 경제 성장과 소득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1인당 GDP가 25,000달러 정도로 상승할 때까지 시민들의 경제생활, 문화생활, 위생과 건강이 크게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79)</sup> 그러나 그 이상이 된다고, 그 비례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령 2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가 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두 배 이상의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오히려 불평등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경쟁 심리, 일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우울증과 자살 등 소위 선진국병들이 생길 수 있다. 가난한 나라는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취약하다면, 선진국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등에 취약하다. 또한 선진국

78) 위의 책, 311-313.

7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 (New York: Penguin Books, 2010), 6-8.

의 경제 성장 강박증은 생태계 훼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sup>80)</sup> 이렇듯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상의 선에서는 그 영향력이 미미해 지고, 그보다는 각 개인과 가정과 이웃 주민, 직장, 교회 등 공동체의 연대감과 친밀감이 비중이 커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가 최대 과제가 아니라 정의의 사회적 실현으로서 불평등 완화와 친밀한 공동체 형성,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생태지향적 경제윤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북반구(선진국)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남반구(후진국, 개발도상국)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정의와 생태 정의 실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sup>81)</sup>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타 종교나 유물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교회는 약자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는 성경과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교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 정의, 그리고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구를 살리고 보존하는 생태 정의에 입각한 생태지향적 경제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개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IV. 나가는 말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만한 넉넉한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기존의 복지예산을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의미도 아니다.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존의 복지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추가로 재원을

80) 위의 책, 9-11.

81) Edith Rasell, *The Way of Abundance: Economic Justice in Scripture and Socie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22), 242-243.

마련하는 것으로서 국토보유세와 공유재세, 환경세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에게 더 적합한 직업을 알아보고, 때로는 쉼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육아 등 가사와 돌봄, 사회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질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와도 병행이 될 수 있고, 기존의 제도가 안심소득으로 개편이 되어도 병행될 수 있다.

기독교 경제윤리학적으로, ‘성서의 약자보호 정신과 거룩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 보전’이 기본소득에 대한 근거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햇빛을 주시듯이 모든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 물질을 독점하고자 하는 탐욕이 경제 불의를 형성하고 물질만능주의와 소비문화 극대화는 생태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경제 정의’와 ‘생태 정의’는 맞물려 있다. 곧 생태계 위기와 가난은 함께 극복되어야 하기에 기본소득은 경제 정의로서 “누구나 받아야 할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단순히 용돈 정도의 금액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공유재를 통해서 물질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는 곧, 물질만능주의와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경제관을 ‘안식(쉬어감)과 공존, 지속가능한 경제’로 개혁할 수 있는 정신(spirit)을 제공하기에 생태지향적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분배정의로서 단지 물질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해방적 의미가 있다. 우리 시대의 과도한 성장주의와 물질주의를 반성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인간의 공존과 연대’로 실현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탐욕과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자연과 문화의 공유적 가치를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회는 경제

정의의 실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물인 지구가 다음 세대에도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생태적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 문화, 물질만능주의에 제동을 걸고, 안식과 공유, 공존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 서적

-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경기: 박종철출판사, 2020.
- 곽노완.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 서울: 라움, 2016.
- 권정임 외.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경기: 진인진, 2020.
- 경기연구원 엮음. 『답이 있는 기본소득-국토보유세 설계와 세제 개혁』. 서울: 다  
할미디어, 2021.
- 김근주 외. 『희년』. 서울: 홍성사, 2019.
- 남기엽 외.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경기: 이상북스, 2023.
- 박기성, 조경엽.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21.
- 박성철 편.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경기: 한국학술정보, 2023.
- 성석환 외. 『오늘의 기독교윤리학』. 서울: 장신대출판부, 2023.
- 정미현 외.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  
화』.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 정상훈. 『동네의사와 기본소득』. 경기: 루아크, 2020.

### •국내 논문

- 강원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인 그린뉴딜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구상.” 「신  
학과교회」 14(2020), 289-320.
- 권정임. “생태공유지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인문사회21」 10(2)(2019), 1565-  
1579.
- 김동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  
리」 44(2019), 49-82.
- 김성기. “사회보장제도의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  
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9 no.4(2019), 598-608.
- 김유준. “존 칼빈의 경제사상과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65(2023), 1-27.

- 목광수.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분배 정의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3(2020), 158-182.
- 이지나, 황명진. “사회복지 담론으로서의 기본소득 고찰.” 『공공사회연구』 제12권 1(2022), 124-158.
- 진강수. “부동산 공화국을 넘어 땀이 대우받는 세상으로 가는 길.” 계간 『창작과비평』 여름호 (2021), 260-280.
- 정재후.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권리에 대한 기독교 경제윤리학적 연구.” 『기독교 사회윤리』 55(2023), 401-428.
- 조혜신. “희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소고-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신앙과학문』 23(3)(2018), 263-294.

•번역서와 외국어 문헌

- Brueggemann, Walter.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7.
- Hall, David W. *Calvin in the Public Square*. New Jersey: P&R Publishing, 2009.
- Myers, Ched. *The Biblical Vision of Sabbath Economics*. UK: Lab/Ora Press, 2023.
- Parijs Philippe Van, Vanderborcht Yannick. *Basic Income*. 홍기빈 역. 『21세기 기본소득』. 서울: 흐름출판, 2018.
- Standing, Guy. *Basic Incom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 Swoboda, A. J. *Subversive Sabbath*.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18.
- Wilkinson, Richard, Pickett, Kate. *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 New York: Penguin Books, 2010.
- Rasell, Edith. *The Way of Abundance - Economic Justice in Scripture and Socie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22.
- Sandel, Michael J.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서울: 와이즈베리, 2022)
- Stiglitz, Joseph. *Th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경기: 열린책들, 2020.
-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7.

\_\_\_\_\_. *Body Politics*. 김복기 역. 『교회, 그 몸의 정치』. 대전: 대장간, 2011.

Zwolinski, Matt and Fleischer, Miranda. *Universal Basic Incom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논문투고일: 2024년 10월 29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09일

• 국 문 초 록 •

최근 십여 년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로 인한 산업구조와 고용의 변화로 인하여 ‘불안정 노동자’(precarariat)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시민권의 기본적인 요소로, 실질 자유 증대를 위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기독교 윤리학적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에게 수혜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의 세대주에게 주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별도로 각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반면에 ‘국토보유세’, ‘탄소세’, ‘공유제’, ‘빅데이터’ 등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고 정당하다. ‘안심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수급자의 수익이 늘면 수급액이 줄거나 철회되는 이유로 인해서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안심 소득이 시행된다고 해도 기본소득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체계 안에서도 병행이 될 수 있고, 기존의 복지체계가 안심 소득제로 변경이 되어도 여전히 병행될 수 있다.

**주제어:** 기본소득, 안심소득, 경제정의, 불로소득 과세, 공유제